韓國 컴퓨터情報學會 論文誌
第13卷 第3號, 2008. 5.

2008-13-3-5-5

사이버범죄의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해의 기초
- 형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임 병 락*

The Base of Understanding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 Centering on Regulations in Criminal Law -

Byoung-Rak Lim *

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 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 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cu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phasized while the evil influence of its side effect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inforcement of cyber ethics, and legal mind of IT technicians, strict security by managers, active efforts to develop legitimate contents by managers of web hardware and P2P,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s against crimes by internet users. And this study approaches new norms on computer and cyber crimes in interpretational sense of criminal law, and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raditional theories, assumptions, and precedents involved in regulations against computer virus distribution.

▸ Keyword : 사이버 범죄(cyber crimes), 데이터 탐지죄(data detection crime), 사이버사기죄(cyber fraud),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specific media record such as electronic record)

• 제1저자 : 임병락
• 접수일 : 2008. 4. 14, 심사일 : 2008. 4. 24, 심사완료일 : 2008. 5. 24.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강사

Ⅰ. 서 론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가 범행의 수단 또는 목적이 된 모든 일탈 행위'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 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누고 있는데[1],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2],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의미하고, 일반 사이버범죄는 시기,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음란 · 도박 등 사이버 공간을 범죄의 장소나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되 규범'이라는 큰 주제를 모두 다룬다는 것은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으로는 형법 제227조의2조상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제229조상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 제232의2조상 사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제234조상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제314조제2항상 업무방해죄, 제316조 제2항상 비밀침해죄, 제366조상 손괴죄,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컴퓨터 바이러스의 무권한 침투행위

갑은 평소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어느 날 갑은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동 바이러스를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에 전송하였다. 동 바이러스는 인터넷 환경상 사금융업체와 상거래업체의 웹사이트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동 웹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갑의 행위가 형법상 무슨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서 형법해석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1 형법 제366조상 손괴죄의 성립 여부

위의 사례에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의 웹사이트를 손상시킨 갑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등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와 상호관련을 갖고 있으며, 동조의 구성요건은 전통적인 규범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보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3]

동조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법상 동조의 보호법익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완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기타의 광학기록 등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 문서성과 재물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위의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재물손괴등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행위자는 타인의 웹 사이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동 장치상의 고정된 프로그램[4]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동조가 요구하는 규범은 개별데이터[5]상의 마그네틱 테입상, 신용카드 등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로 칩 등, CD상에 레이져 방식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과 개인용, 회사용, 단체용, 공공기관용 등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이 규범이 요구하는 수범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동 행위는 동조가 요구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행하였다.

2.2 형식적 체계에 대한 비판

동조는 형법 각칙에서 제42장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상 체계성을 갖고 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 동법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규정하여 사적인 재물 등과 공익건조물 등에 대하여 보호하는 목적상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우리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와 동법 제323조상 권리행사방해죄는 동일조항 내에서 전통적인 규범과 신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하여 양 규범의 해석론상 적용범위와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와 동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서로 각각의 조문으로서 체계적인 지위를 갖게 하여 독립하여 규정 하였다. 우리 현행 형법 각clr상 3가지 체계의 구성요건 유형에 대한 의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동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독립적인 규정임에 반하여, 동법 제316조(비밀침해죄)와 동법 제366조(재물손괴죄)는 그 반대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하였다는 점이다.[6]

2.2.1 행위객체상 관점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 제1항상 전단의 규범이 요구하는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형체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문서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추가하여 포함한 개념을 보호 법익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동조 전단에서 말하는 형체물적인 성격이 있다.〔7〕

따라서 형법상 동조가 보호하는 법익은 유형물인 타인의 재물이나 무형물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완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기타의 광학기록 등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 문서성과 재물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입법자의 의도

동조는 1995년 형법 개정시 동조상의 재물 외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한 것은 컴퓨터 데이터 등의 소거(消去) 또는 변경도 손괴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상의 의도가 있다.〔8〕

동조에서 말하는 특수매체기록에는 전자기록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나 광학기록이 포함되며 데이터의 소거(消去)도 손괴에 해당한다고 입법자는 밝히고 있다.

2.2.3 비교법적 관점

동조에 관하여 독일 개정형법의 입법체계와 비교하여 보면 동개정안은 형법 제202조a의 제2항에 데이터의 탐지죄란 이름 아래 자기에게 사용할 권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진입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적인 조치를 한 데이터를 권한없이 탐지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은 제1항상의 데이터라 함은 전자적으로, 자기적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가시적이 아닌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중개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하여 데이터의 개념을 형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 형법전 제26장에는 손괴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3조가 전통적인 손괴죄를 보호 대상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규범으로서 제303조a상 데이터 변경죄와 제303조b상 컴퓨터 파손죄를 추가하여 데이터와 컴퓨터 등 데이터처리설비기기를 세부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아래 양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양 조문을 살펴 볼 때 제303조a는 데이터를 손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써 성격과 제303조b는 하드 웨어인 컴퓨터 등을 손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구분하여 신종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을 대처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죄와 일본 형법 제366조상 구성요건은 전통적인 규범과 신규범을 동일 조항에서 동시에 보호하는 형식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문상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 한국형법 제366조는 일본형법 제366조를 그대로 번역하여 그 규범을 입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미숙과 무성의한 입법자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전통적인 규범과 신규범사이에 입법상의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2.3 실질적 관점상 비판

동조에 의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전통적인 규범인 재물과 신규범인 전자기록물 등을 동일 조항 내에 규정하여 하나의 조문이 동일한 객체를 보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와 컴퓨터 등과 관련한 법규범을 입법할 당시 입법자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을 것은 분명한데 왜 독일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재물이란 객체와 전자기록물이란 객체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입법을 하였는가이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법규범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해석론상 전통적인 법규범과 신규범이 하나의 조문안에서 상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따라서 해석론상 유추적인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며 동조의 입법을 통하여 입법자는 스스로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형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사용사기죄란 규범은 한국에 있어서 생소한 규범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독일형법 제263조의a상 컴퓨터사기죄 또한 독일의 형법학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9〕

컴퓨터사용사기죄란 규범은 사기죄라는 전통적인 규범을 근거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 등이 출현함과 동시에 생성된 신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라는 전통적인 규범이 그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규범과 전통적인 규범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형법 제263조의a(컴퓨터사기죄) 경우 전통적인 규범인 사기죄(독일 형법 제263조)의 구성요건과 병렬적이고 대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10〕

구체적으로 행위의 객체가 기계인 컴퓨터란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기망이 대인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기죄의 작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와 동일한 기계에 대한 기망행위와 기계자체의 착오를 동조에 신설하여 보충한 것〔11〕이다. 즉 사기죄가 사람의 심리적인 면을 이용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에, 컴퓨터사기죄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규범의 체계는 전통적인 규범인 재물과 동 규범에 대한 신규범인 동력이란 규범을 보호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기죄라는 전통적인 규범과 컴퓨터사용사기죄란 규범은 양자가 상호 병렬적인 관계와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형법 제366조의 전단상 규범인 재물과 후단상 규범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동일한 조항내에 규정한 것은 우리 형법의 형식적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1 형법 제314조 2항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동조상 요구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첫째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둘째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셋째로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갑은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의 웹사이트에 침투시켰고 동 바이러스는 타인 즉 인터넷 환경상 상거래업체와 사금융업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침입하여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훼손하여 동 업체들의 고유한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한 행위를 행한 갑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아서 갑의 행위는 동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12] 위의 사례에서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나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갑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3.2 형식적 체계에 대한 비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4조상 업무방해죄는 제1항에 전통적인 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동조 제2항에 신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등죄는 단일 조항 내에 전통적인 규범과 신 규범을 동시에 보호하는 체계성을 갖고 있다.[13] 구체적으로 동조 전단에 명시한 규범은 형체성이 있는 재물을 보호하는 이익을 갖는 전통적인 개념이며 한편 후단에 새로 규정한 규범은 형체성이 없는 전자기록물 등 특수매개개록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와 동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서로 각각의 조문으로서 체계적인 지위를 갖게 하여 독립한 규정으로 하였다. 앞서 말한 3가지의 유형에 대한 의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동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독립적인 규정임에 반하여, 왜 동법 제316조(비밀침해죄)와 동법 제366조(재물손괴등죄)는 그 반대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하였는가 이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죄)나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입법한 입법자는 분명 비교법적인 입법상의 체계를 검토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일목요연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는가란 의문이 제기된다.

3.3 비교법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은 형법전상 신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은 모두가 전통적인 규정의 다음으로 체계를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신 규범의 명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각 규정은 독자성을 갖고 있는 체계적인 특성이 있다. 예컨데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사기죄와 동법 제263조a상 컴퓨터사기죄, 동법 제202조상 서신비밀침해죄와 동법 제202조a상 데이터탐지죄, 동법 제266조상 배임죄와 동법 제266조상 배임죄와 동법 제266조b상 수표카드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 동법 제267조상 문서위조죄 또는 동법 제268조상 기술적 기록의 위작죄와 동법 제269조상 증명력이 현저한 데이터의 위작죄 또는 동법 제270조상 정보처리에 의한 법적거래상 기망죄, 동법 제 303조상 손괴죄와 동법 제303조a상 데이터변경죄 또는 동법 제 303조b상 컴퓨터파손죄와 동법 제 303조c상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전자는 전통적인 규범의 보호를 후자는 새로운 규범을 보호목적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규정의 형태를 취하는 체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전상 형식적인 체계는 독일 형법전 체계처럼 전통적인 규범과 신규범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 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하는 조문의 형태로 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가 문제되는데, 이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가 법적증거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표 1. 컴퓨터 포렌시스 관련 주요 기술
Table 1. Computer Forensics Causing Major Technique

구분	명칭	용도	예
하드웨어	디스크 복제 장치	디스크를 비트 단위로 복제	Logicube www.logicube.com
	디스크 쓰기방지 장치	디스크에 우발적인 쓰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IDE -> IDE, SCSI -> IDE USB2 -> IDE, IEEE1394 -> IDE	WWW.encase.com (그림 1참조) www.logicube.com www.digitalintel.com
개별 소프트웨어	Hashing S/W	디스크 전체 또는 특정 블록, 또는 파일단위로 해시를 계산하여 봄으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	dd(Linux)
	파일복구 소프트웨어	삭제된 파일을 복구,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복구	FinalData www.finaldata.com
	고급검색도구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에 대해서 검색-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압축파일, 슬랙영역, 삭제된 파일	www.hurricanesoft.com www.winhex.com
	암호 및 패스워드 해제 소프트웨어	Zip 또는 Windows 시스템의 암호를 크랙	www.hackersnews.org/pds/sniffer.htm
종합소프트웨어	컴퓨터 포렌식스 종합 소프트웨어	증거자료 획득, 검색,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작업을 한 소프트웨어에 수행할 수 있게 함.	www.encase.com (그림2 참조) www.finaldata.com www.ftk.com

컴퓨터의 특징은 대량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자료를 빠르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점이다. 컴퓨터가 다루는 자료는 디지털형태로 기본적으로 0과 1(신호가 있고, 없고)의 이진데이터로 구성되고, 문자 또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드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된다. 위에표 〔Ⅰ〕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기법이 필요하다.

3.4 연혁적 관점

동조는 전통적인 규범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신종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2월에 신설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규범이 구성요건요소로써 동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데이터 등에 의한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하였다. 따라서 양 규범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업무에 제공되는 목적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동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병렬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동조의 비교법적 구성요건 내용은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일본 형법 제234조의 2를 의용하고, 일본 형법 제234조의 2는 독일 형법 제 303조의 b를 충실하게 의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구성요건의 내용적인 의용은 아직도 일본이나 한국이 형법 조문을 입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상의 규범을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있으며 결국 독일 형법에 종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형법 제303조b와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과 차이가 있다면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는 점에 비하여 독일 형법 제303조b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동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래 〔표 2〕 사이버범죄의 증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개인은 인터넷 무료사이트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팔려나가 스팸공해에 시달리는가 하면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도 인터넷을 통하여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표 2.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 : 경찰청)
Table 2. Cyber Crimes in The Type of Arrests(the National Police Agency)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범죄
		소계	해킹	바이러스	
2000년	1,715 (2,190)	278 (363)	275 (360)	3(3)	1,437 (1,827)
2001년	22,693 (24,455)	7,595 (8,099)	7,512 (8,004)	86(95)	15,098 (16,365)
2002년	41,900 (47,252)	9,707 (10,762)	9,650 (10,689)	57(73)	32,193 (36,490)
2003년	51,722 (56,724)	8,891 (10,047)	8,844 (9,992)	47(55)	42,831 (46,677)

( )의 숫자는 검거 인원.

실제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한 금융거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검거현황을 보면, 2001년, 1,725건, 2001년 22,693건, 2002년 41,900건, 2003년 51,7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증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개인은 인터넷 무료사이트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팔려나가 스팸공해에 시달리는가 하면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도 인터넷을 통하여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무권한 침투행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인 형법 제366조상 손괴죄의 성립 여부 및 형법 제314조 2항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서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법적 연혁적 관점에서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살펴 보았다. 따라서 향후 형법 개정시 특별법 이외에도 형법상 사이버범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할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ctrc.go.kr) 참조

〔2〕 해킹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를 말한다.

〔3〕 김일수,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p331 :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p531.

〔4〕 일명 저장판이라고 하며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자성(磁性) 원판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또 자성체(磁性體)의 원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록하고 다시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정보처리장치(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를 말하기도 한다. "엣센스 독한사전", 민중서관, 1996, p2076.

〔5〕 유용봉, "개별데이터의 습득과 절도죄의 성립여부",이형국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8, p503;
Yong-Bong Yoo, Codekartenmissbrauch am POS-Kassen-System(Strafrechtliche Ueberlegungen zur Computerkriminalitaet), Peter Lang Verlag Frankfurt am Main/ Berlin in Germany 1997, 45 f., 127 f.

〔6〕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1996.2. p5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p395.

〔7〕 한편 현행 형법 제346조와 동법 제372조상 동력이라도 관리가 가능할 경우 동법 제329조나 동법 제336조상 같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을 들 수 있다. 이때 동력은 재물과 달리 형체성이 없으므로 전통적인 규범과 별도의 조문으로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8〕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10. 법무부, p191.

〔9〕 Yong Bong Yoo, aaO, S. 85 ff.

〔10〕 Schoenke/Schroeder-Cramer, §263 a Rn, 1: Sonada, sistra 1988, 172.

〔11〕 Dreher/Troendle, §263 a Rn, 1: Samson, SK, §263 a Rn, 1: Schoenke/Schroeder-Cramer, §263 a Rn, 1: Sieber, Informationstechnologie, S. 37; Haft, NStZ, 1987, 7; Lenckner, ComputerKriminalitaet, S. 34; Tiedemann, JZ 1986, 869; 김종원, "컴퓨터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연구", 88전기통신학술연구과제, 1988. 12, p31.

〔12〕 동조는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형법개정안제안이유서", 1992, p171.

〔13〕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장영인,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1996, 2, p5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p395.

저 자 소 개

임 병 락

2007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8년~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시간강사